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민 원 봉 사 과

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

제출연월일: 2025. 5. . 제 출 자: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단순 본인확인 또는 관행적 요구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대상으로서 구미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인감증명서 요구 조항 정비

- 1) 「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」별지 제3호서식(안 제1조)
 - (당초) 인감증명서
 - (변경)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
- 2) 「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별지 제7호서식 (안 제2조)
 - (당초) 인감증명서
 - (변경)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」의 개정)

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제2호 중 "인감증명서"를 "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"로 한다.

제2조(「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"인감증명서"를 "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대리인 선정 신고

「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□ 구	역	명 :	구미시	교리2지구	도시개발사업
\cup		0 -		<u> </u>	<u> </u>

□ 환지예정지 위치: 구미시 선산읍 리 번지 (브럭 롯트)

□ 환지예정지 면적 : m²

토지소유자 주 소:

성 명: ①

주민등록번호:

대 리 인주 소:

성 명: ①

주민등록번호 :

첨부서류 1. 토지등기부 등본 1부

2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 1통

구미시장 귀하

[별지 제7호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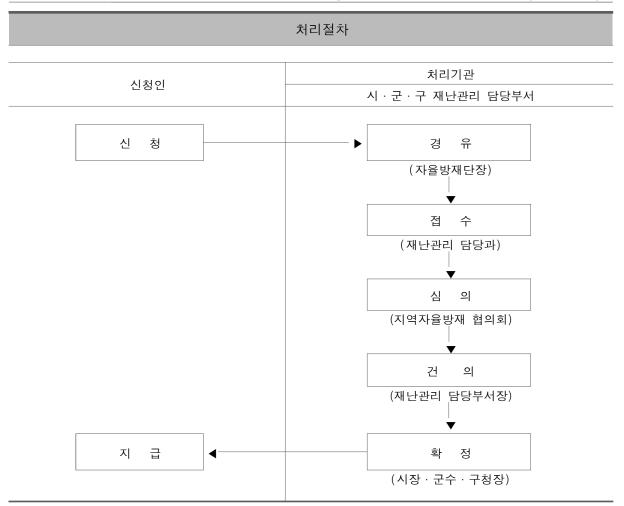
요양〔] , 장해 [] , 장제 [] ,	유족 [] 재해보상청구서
	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[
※ 신고섭수 우 접수번호	·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일	+. 처리기간 30일
	소속	전화번호
사고자	주소	
* 1 * 1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	123 122(1123 122)
	주소	전화번호
청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사고자와관계	
	사고(사망)일시	
	사고(사망)장소	
사고경위	사고경위	
및 요양	1. 화재【 】 2. 구조【	】 3. 구급【 】 4. 기타【 】
	요양(진단)병원	요양(진단)부위
	요양(진단)결과	요양기간
	요양보상	장해보상
청구금액	장제보상	유족보상
	청구금액	
「자연재해디	H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 및 「구미시	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」 제15	5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	ł.
		년 월 일
		긴 술 2
	청구인 :	(서명 또는 인)
위의 사실	과 틀림없음을 증명함.	
		년 월 일
	단장 :	(서명 또는 인)
구미시장	귀하	
	210m	.m×297mm[밴산지 80g/㎡(재홛용푸)]

		(' ' ' ' ' ' '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, 2. 장해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,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명세서 각 1부. ② 장해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해보상: 주민등록표 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·유족보상: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, 입금계좌확인정보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

관계법령

□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

- 제13조(인감증명서와의 관계) ① 관계 법령(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 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 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 -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.
 - 1.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
 - 2.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

3	는 관 부 서	민원봉사과
입	과 장	오 명 화
안	팀 장	황 은 영
자	담 당 자	오 연 수 (480-5634)